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제출 안내

■ 당첨자 제출서류 [서류제출 기한 : 08.24(월) ~ 08.30(일) 10:00~16:00 / 장소 : 견본주택]

서류	체크사항	
기본서류	신분증 사본(본인)	본인확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에 한함), 본인에 한하여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가능
	인감도장(본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인감도장 일치여부 확인)
	주민등록표등본(본인)	발급일 · 전입일 · 주민번호 · 세대구성 사유 · 배우자 확인 등 (모든정보표시발급)
	주민등록표초본(본인)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확인 (모든정보표시발급)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세대구성원 확인 (상세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본인)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개월 동안 계속하여 90일 초과 국외거주사실 확인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요건 확인	[양식] 견본주택 비치
	혼인관계증명서(본인)	혼인기간 확인 (상세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가구원 전원 제출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가구원 전원의 소득 입증자료 (신혼부부 소득증빙서류안내 참조)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모든정보표시발급)
	복무확인서(본인)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이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해당주택건설지역(속초시 및 강원도)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발급)
	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상세발급)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양식] 견본주택 비치
	비사업자 확인각서	[양식] 견본주택 비치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소득사실증명	현재 무직자로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증명서(자녀)	출생 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상세발급)
제3자 대리인 추가서류	위임장	[양식] 견본주택 비치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발급에 한함 , 인감도장 일치여부 확인)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또는 서명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대리인 본인 확인)
부적격 의심자 추가서류	부적격 사유에 따른 소명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부적격 사유에 따른 소명서류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30)**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함
 ※ 상기 서류는 당첨자의 적격 여부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이므로,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며, 당첨자의 상황에 따라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상기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 '상세'발급을 원칙으로 함. 또한, 주민등록표등(초)본에 '과거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정당계약 체결 안내 [09.01(화) ~ 09.03(목) 10:00~16:00 / 장소 : 견본주택] *예비입주자의 경우 별도 안내

구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금[계약금(1차)]입금증 ※ 계약금 현장 수납 불가 계약자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사전 서류제출기간에 사용한 인감도장(인감날인 대조)]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 (사전제출대리인과 다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견본주택 비치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추가(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에 한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근로자	일반근로자 (해당직장, 세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일반근로자[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직장, 세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재직증명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해당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근로기간이 1개월 미경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재직증명서
	전년도 전직 근로자 (해당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직장가입자만 해당] (해당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세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세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예정신고서 (매입, 매출이 기재된 부분) 사업자등록증명
	법인사업자 (해당직장, 세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사업자등록증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세무서, 해당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해당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사실증명 비사업자 확인 각서(견본주택에 비치)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직장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직인날인된 서류에 한함.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